대체부품 성능·품질의 인증 등에 관한
표준업무규정

제정 2014.12.26.
개정 2015.11.12.
개정 2016.04.22.
개정 2016.11.14.
개정 2017.01.19.
개정 2017.04.13.
개정 2017.06.14.
개정 2017.12.28.
개정 2018.07.13.
개정 2019.12.12.
개정 2021.09.30.
개정 2021.11.05.
개정 2022.09.28.
개정 2024.02.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20조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인증(이하“품질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이하“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부품인증기관”이란 고시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인증기관”이라 한다)
2. “대체부품시험기관”이란 고시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
3. “인증심사”라 함은 서류심사, 공장심사, 인증시험을 말한다.
4. “인증표시”라 함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인증부품에 인증씰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증부품”이란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을 말한다.
6. “외장부품”이란 차량 외부에 장착되는 부품으로서 외부에 나타나는 외관형태 및 공기저항, 쿨링성능, 소음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
7. “등화부품”이란 야간에 지형지물에 대한 인식, 방향지시, 경고 등을 위해서 전방 및 후방에 설치하는 부품
8. “기능성 부품”이란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 및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부품
9. “소모성 부품”이란 운전자가 교체주기를 준수하여 교환함으로써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부품

10. “자동차 제작사 부품”이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부품으로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위탁받은 부품제조사에서 생산되어 자동차제작사 상표가 표시된 부품 포함)을 말한다.

11. “부품제조사 상표 부품”이란 OES(Original Equipment Supplier)부품으로 자동차제작사로부터 OEM부품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부품제조사가 OEM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자사 상표로 생산한 부품을 말한다.

제2장 대체부품 시험기관

제3조 (시험 기관 협약) ① 고시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향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협약체결 의향서를 받은 경우 제 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시험 기관의 협약취소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인증시험 (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기관의 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협약을 체결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수행한 경우
3. 기타 시험기관으로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한하여 시험기관과의 협약 효력을 중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시험을 거부한 경우
2. 별표 1의 시험기관요건에 부적합하게 운영할 경우

제3장 위원회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심사위원회를 포함한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및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증기관 소속

이외의 외부위원이 각 기관별 1인 이상이 되도록 품질인증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인증기관, 보험개발원과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된 품질인증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서 명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인증기관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4.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인증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전통보 없이 연속 3회 이상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2.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시험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의한 시험기관의 협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인증부품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 조 (대체부품 인증대상 등) ① 고시 제15조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대상은 별표 5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대상에 대한 인증부품 시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장 인증심사

제7조 (인증심사의 절차)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인증심사 신청을 한때에는 서류심사, 공장심사, 인증시험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이미 심사를 받는 등 별도의 서류심사와 공장심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제외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인증심사를 받은 제품의 재질 및 규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온라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품질인증의 절차를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심사) ① 신청인은 서류심사를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체부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업체 설명서
2. 인증신청부품 관련 제원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해외업체의 경우 공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기업신용등급 증빙서류 사본 등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 시 제출)
5. 산업재산권·신지식재산권 목록 및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6. 국내외 인증부품 품질인증기관 인증실적 및 증빙 자료(해당 시 제출)
7. KS, ISO 등 국가 및 국제규격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실적 및 증빙자료 (해당 시 제출)
8. 제조물배상보험가입 증빙 자료(해당 시 제출)

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공장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한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공장심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서류심사 시 제출된 해당항목이 포함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정 및 품질관리현황
2. 기술수준 및 생산기술 혁신성
3. 제조 및 검사설비 현황
4. 소비자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
5. 기타.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 하여금 제9조 제1항에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참고하여, 별표3의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할 경우 공장심사 7일 이전에 심사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가 별표3의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시험)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9조에 의한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 제3조의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실시 할 것을 통보 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은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시료 등을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증시험 실시를 통보받은 시험기관은 별표 6에서 정한 인증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인증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합격한 것으로 하여 인증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1. 국제기준(UN기준)에 의한 “E”마크가 표시되어 있거나, 미국의 대체부품인증기관(CAPA: Certified Automotive Parts Association, 이하 ‘CAPA’라 한다)의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해당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또는 인증기관)에 제출 할 경우
2. <삭제>
3. 신청인이 부품제조사 상표 부품(OES부품)에 대해 인증시험 신청 시,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할 경우

③ 시험기관은 불합격 등 재시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험항목 등을 신청인과 협의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④ 시험기관은 시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증시험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고시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인증시험을 의뢰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직접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자동차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을 활용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부품 인증신청자와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기능성·소모성 부품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별, 자동차의 종류(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다)로 구분하여 인증시험을 진행한다. 단, 인증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차명별, 사용 연료별로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⑦ 특정 제작사가 시험기관에 신청한 제작사 부품(OEM) 시료의 시험결과는 다른 특정 제작사에 제공되어 동일한 시료의 시험이 면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정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시료의 시험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별표6 자동차부품 성능·품질 인증시험 기준 및 방법 등에서 시험기준 등을 “제조사 부품 대비 95%이상(또는 ±5% 이하)”으로 규정한 경우 해당 인증신청 부품에 대한 인증시험을 30회 실시한 이후에는 그 결과의 평균값을 시험기준 등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서의 교부

제11조 (인증서의 교부)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체부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은 인증서를 발급 받기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 서약서 및 대체부품 인증신청자 자체 서식에 의한 대체부품 생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부품 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체부품 제조사 및 소비자 등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한다.

제12조 (인증서의 재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품질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부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부품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한다.

제13조 (인증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 12호 서식의 대체부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7조에서 정한 인증의 취소사유 등이 없는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6장 인증표시

제14조 (인증표시의 사용 등)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 제품에 부착할 별표 4의 제1호에 따른 인증씰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요건을 확인 후 인증씰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인증씰만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4의 제1호에 따라 인증씰을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별표 4의 제2호 따른 인증로고는 인증부품 포장재, 서류, 홍보자료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증로고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홍보 및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인증부품 관리

제15조 (인증부품의 관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 11조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인증번호, 인증씰 번호, 부품명, 부품번호, 발행일,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부품의 생산, 공급 및 사용 등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제 1항의 인증번호와 인증씰 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 등이 발행한 경우 인증부품의 회수 또는 수리 등을 위해 홈페이지 또는 언론 등에 알려야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로 인한 인증부품의 회수 또는 수리 등

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 할 수 있도록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3%를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인증오류에 따라 발생된 손해 배상
2. 대체부품제조사가 손해배상 능력이 없거나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손해배상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인증부품의 점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부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한다.

1.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제 9조 공장심사절차에 준하여 인증부품시험 절차와 관련된 생산여건의 변동 및 품질문제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때 인증부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단, 인증부품 제조사에서 자기 품질 관리를 위해 년1회 이상 제품시험을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인증시험은 예외로 한다.
2. 수시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임의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중에서 정기점검에 준하여 점검한다. 이때 인증부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 10조의 인증시험 절차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인증부품의 대상 및 시험항목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3. <삭 제>
4.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 시 인증기관의 장은 정기점검, 수시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하며, 언제든지 열람에 응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착수 7일 전에 그 사실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라도 점검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 3조에 의한 시험기관 또는 인증부품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시설을 갖춘 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인증부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제17조 (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부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가. 제14조 제3항의「인증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나. 제16조에 의한 인증부품의 점검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인증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라.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해당 제작자에게 통보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 하여야 한다.
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나. 인증부품에 결함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다. 휴업・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받은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라. 인증업체의 경영 등 자체 사정에 의해 인증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마. 인증부품 인증내용과 다르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바. 제16조에 의한 인증부품의 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사. 제 1항 제 1호에 의한 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아.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 1항에 의한 인증부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이 인증부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품목은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인증취소 품목의 인증절차는 제4장의 인증심사절차에 따른다.
④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기관의 장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품질인증 또는 인증의 취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인증기관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시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이의신청 사실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인증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내용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불만사항을 통보받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수수료 등

제19조 (수수료의 납부)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정하여 품질 인증을 받고자하는 자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의한 서류심사
2. 제9조에 의한 공장심사
3. 제14조에 의한 인증씰 발행
4. 제10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제출된 시험성적서와 인증 신청부품의 동일성 확인
5. 제16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6. 제18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0조에 의한 인증시험 수수료는 시험기관에서 정한 수수료(시료 등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제반시험 관련자재는 별도임)를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을 받고자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신청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인증기관의 장은 본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따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업무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체부품 시험기관 요건

1. 수행 및 인력조건

1)인증대상 품목별로 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별표 5 제2호의 등화부품, 제3호의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에 대한 인증시험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확보한 자와 시설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필요한 경우 제5조 제2항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시설사용협약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2)인증부품 시험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조직, 업무분장 및 관련 규정 등을 갖추고 대체부품 사용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개발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할 것

- KS / ISO 등에 의한 제품인증 또는 품질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에서 품질관리 또는 자동차관련분야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사 1급 또는 자동차산업기사 1급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인증기관장이 관련분야 종사자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시설조건

협회 문의

[별표 4]

인증표시방법

1. 인증씰 표시방법

대체부품 인증을 받은 자는 부품에 A 또는 B 유형의 인증씰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또는 B 유형의 인증씰을 부품과 그 부품의 최소포장에 부착 또는 인쇄할 수 있다.

가. 부품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표시공간이 부족한 경우
나. 표시로 인하여 부품 성능에 지장을 주는 경우
다. 기타 사유로 인해 A 또는 B 타입의 인증씰을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

<그림1> 인증씰(A 유형)

<그림2> 인증씰(B 유형)

2. 인증로고 표시방법

인증부품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 그림3 의 인증표시 로고를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그림3> 인증표시 로고

1) --> 2)

	1)	2)
C	60%	48%
M	15%	2%
Y	80%	80%
K	50%	0%

	1)	2)
C	88%	100%
M	9%	79%
Y	0%	8%
K	0%	22%

	1)
C	0%
M	0%
Y	0%
K	20%

한국자동차부품협회
Korea Automobile Parts Association

가로 2.5 : 세로 1

가로 2 : 세로 1

인증표시 로고는 엄격한 품질인증 프로세스(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의 규격·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성능·품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을 통과한 업체에 사용권을 부여하며 제품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표시 할 수 있다.

[별표 5]

대체부품 인증대상

1. 외장부품(Body Parts) : 13종 41품목

분류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KAPA G01	외장부품 (Body Parts)	범퍼커버 (Bumper Cover)	전 범퍼커버
2				후 범퍼커버
3				범퍼 스포일러
4				번호판 브라켓
5			언더커버 (Car Under Cover)	언더커버
6			리어 코너 판넬 (Rea rCorner panel)	좌 리어코너 판넬
7				우 리어코너 판넬
8			휀더 (Fender)	전 좌 휀더
9				전 우 휀더
10				후 좌 휀더
11				후 우 휀더
12			전 판넬 (Front Panel)	라디에이터 서포트
13				레디에이터 캐리어
14			본넷 (Hood)	본넷
15				본넷 쇼바
16			도어스킨 (Door Skin)	전 좌 도어 스킨
17				전 우 도어 스킨
18				후 좌 도어 스킨
19				후 우 도어 스킨
20			트렁크 (Trunk)	트렁크 덮개
21				스포일러
22			그릴 (Grilles)	라디에이터 그릴
23				범퍼그릴
24			내흙받이 (Inner Fender Liner)	전 좌 내 흙받이
25				전 우 내 흙받이
26				후 좌 내 흙받이
27				후 우 내 흙받이

28			몰딩 (Moulding)	전 좌 도어 몰딩
29				전 우 도어 몰딩
30				후 좌 도어 몰딩
31				후 우 도어 몰딩
32				전 범퍼몰딩
33				후 범퍼몰딩
34				전도어 윈도우 몰딩
35				후도어 윈도우 몰딩
36			후사경 (Side Mirror)	좌 후사경
37				우 후사경
38				좌 후사경 유리
39				우 후사경 유리
40			창유리 (Wind Shield)	전 창유리
41				후 창유리

2. 등화부품(Lamp Parts) : 7종 18품목

분류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40	KAPA G02	등화부품 (Lamps)	후미등 (Tail Lamp)	좌 후미등
41				우 후미등
42			제동등 (stop Lamp)	후 좌 미등 및 제동등
43				후 우 미등 및 제동등
44				보조 제동등
45			방향지시등 (Turn Signal Lamp)	전 좌 방향지시등
46				전 우 방향지시등
47				후 좌 방향지시등
48				후 우 방향지시등
49				좌 보조방향지시등
50				우 보조방향지시등
51			차폭등 (Position Lamp)	전 좌 차폭등
52				전 우 차폭등
53			후퇴등 (Back Up Lamp)	후퇴등

54			주간주행등 (Daytime Running Lamp)	좌 주간주행등
55				우 주간주행등
56			안개등 (Fog Lamp)	좌 안개등
57				우 안개등

※ 주1 법 제30조의5 제2항에 의한 부품자기인증 항목이 포함된 상호결합등화인 경우 반드시 부품자기인증이 된 부품이어야 한다.

3.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Functional · Consumable parts) : 20종 68품목

분류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60	KAPA G03 냉각부품 (Cooling parts)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 (Functional · Consumable parts)	엔진냉각 (Water Cooling)	물 펌프
61				부동액
62				상 냉각호스
63				하 냉각호스
64				서머스탯
65			에어컨 (Aircon)	에어컨 컴프레서
66				에어컨 콘덴서
67			라디에이터 (Radiator)	라디에이터
68				냉각팬
69	KAPA G04 현가부품 (Suspension Parts)		컨트롤암 (Control Arm)	전 로어암
70				전 로어암 부시
71				후 로어암
72				후 로어암 부시
73				전 어퍼암
74				전 어퍼암 부시
75				후 어퍼암
76				후 어퍼암 부시
77			쇼바 (Shock Absorber)	전 쇼바
78				후 쇼바
79			활대 (Stabilizer Bar)	활대
80				활대 링크
81				활대 부시
82	KAPA G05 전장부품 (Electrical Parts)		원동기 전기장치 (Engine Electrical)	배터리
83				점화플러그
84				발전기
85				시동전동기
86				점화코일
87			유리기어 (Window Regulator)	전 도어 유리기어
88				후 도어 유리기어
89			광 원	필라멘트 광원

				(제동등)
90			(Light Source)	필라멘트 광원 (방향지시등)
91				필라멘트 광원 (하향등)
92				필라멘트 광원 (후미등)
93				필라멘트 광원 (안개등)
94				가스방전식 광원(하향등)
95	KAPA G06 제동부품 (Brake parts)		브레이크 (Brake)	전 디스크
96				후 디스크
97				전 캘리퍼
98				후 캘리퍼
99				전 브레이크라이닝
100				후 브레이크라이닝
101	KAPA G07 조향부품 (Steering Parts)		조향장치 (Power Steering)	엔드볼
102				스티어링기어
103				파워펌프
104	KAPA G08 원동기 부품 (Engine mechanical parts)		구동벨트 (Belt)	겉벨트
105				타이밍벨트
106			연료장치 (Fuel)	인젝터
107				연료 펌프
108			원동기 가스켓 (Gasket)	밸브커버가스켓
109				실린더헤드가스켓
110			여과장치 (Filter)	에어필터
111				오일필터
112				연료필터
113				캐빈필터
114			배기장치 (Exhaust)	배기관
115				산소센서
116				터보차저
117				촉매
118	KAPA		등속조인트	등속조인트

119	G09 동력전달부품 (Power Train Patrs)		(Constant Velocity Joint)	등속조인트 부트
120			휠(Wheel)	휠 허브 베어링
121				타이어 공기압센서
122	KAPA G10 오일류 (OIL)		기어오일 (Oil)	엔진오일
123				미션오일
124				기어오일
125				그리스
126	KAPA G11 세정류 (Cleaning)		윈드쉴드 (Windshield)	워셔액
127				와이퍼블레이드